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81호 2020. 8. 13.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7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---1

회 람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681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73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『(가칭)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』예정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13일

사 천 시 장

1.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

사 업 명	위 치	면 적(m ²)	용도지역	비고
(가칭)선진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	사천시 용현면 선진리, 통양리 일원	210,750	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	최초지정일 2017.9.7.

2. 제한사유

○『(가칭)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』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

3. 제한연장 사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함
-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
사 천 시 공 보

제681호

4. 제한내용 :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

-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·증축 (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)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)
-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(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)
- 토지의 분할,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

5. 제한기간 연장

-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기간 만료일(2020. 9. 6)로부터 2년간 연장하며,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로 함

6.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7. 기타 :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(☎ 055-831-3165)에 비치 열람함